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범위에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규정〉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04)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범위에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규정	2
[참고자료]	1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문금주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5. 1. 24.
3. 회 부 일 : 2025. 1.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차 통계를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 전기차 등록 대수는 25,108였으나, 2024년 상반기까지 국내 등록 전기차 누적 대수는 606,610대로 약 24배가량 증가함.

한편, 전기차 충전기 누적 보급 대수도 36만대를 넘어섰으며, 민간 정유회사들을 중심으로 휘발유와 경우, LPG 등을 판매하는 기존 주유소를 전기차 또는 수소차 충전시설을 갖춘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음

하지만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도 전국에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에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규정함으로써 농협 주유소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타목 및 제161조의4 제1항제7호 신설).

1.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범위에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규정

현행	문금주의원안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57조(사업) ① ----- ----- -----.
1. 교육·지원 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나. 농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 농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마.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바.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示範圃), 육묘장(育苗場), 연구소의 운영 사.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아. 귀농인·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자.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1. (현행과 같음)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2. ----- 가. ~ 카. (현행과 같음)

현행	문금주의원안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 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농외소득(農外所得) 증대사업 바.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 사. 위탁영농사업 아. 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자. 농촌형 주택 보급 등 농촌주택사업 차. 보관사업 카.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u><신 설></u>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受入)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5. 복지후생사업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장제(葬祭)사업 다. 의료지원사업 6.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지역농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운영 3. ~ 10. (현행과 같음)

현행	문금주의원안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 ⑦ (생략)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2. 제13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해당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4. 국가, 공공단체, 조합 및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5.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 6. 조합등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신설> 7. 다른 법령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u>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운영</u> 8.·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조합·경제지주의 설립 목적, 조합의 영리 목적 사업 금지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전기·수소차 충전사업이 조합원 실익 증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정부 승인 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2) 농협중앙회

친환경차 보급 확대, 농촌지역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지역농축협 등의 ‘전기·수소차 충전사업’ 수행이 필요하나, 현재 농식품부 승인 사업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상황이고, 지역농축협의 경우 경제지주의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통한 사업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과 같이 승인 사업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 21대 국회 논의 경과

21대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김승남의원, '22.11.22) 되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없이 임기만으로 폐기('24.5.29)됨.

다. 검토의견

(1) 농협경제지주 등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현황

개정안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및 같은 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저장·운송·충전하는 시설(이하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이라 함)을 의미¹⁾함.

현행법은 제57조제1항 및 제161조의4제1항에서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의 사업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
-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각 목 생략>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저장·운송·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다만,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조합 등은 현재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을 일부 수행하고 있음.

이는 지역농협은 제57조제1항제10호, 지역축협은 제106조제10호, 농협경제지주는 제134조제1항제9호에 따라 중앙회의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임.

[지역농협 등 사업 범위]

지역농협	지역축협	농협경제지주
§57①	§106	§161조의4①
■ 교육·지원 사업(1호) -조합원 생산 농산물의 공동 출하·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농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등 ■ 경제사업(2호) -조합원 생산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 -조합원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 등 ■ 신용사업(3호)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受入)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 ■ 복지후생사업(4호)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의료지원사업 ■ <u>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10호)</u>	■ 교육·지원 사업(1호) -조합원 생산 축산물의 공동 출하·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축산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등 ■ 경제사업(2호) -조합원 생산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 -조합원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위탁 양축사업(養畜事業) 등 ■ 신용사업(3호)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 ■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5호) ■ <u>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10호)</u>	■ 농업경제사업(1호 및 §134조①2호)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등 ■ 축산경제사업(1호 및 §134조①3호)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등 ■ <u>중앙회의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제사업으로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2호 및 §134조①2호9호)</u> ■ 조합등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지원(6호)

농협경제지주는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농식품부에 농협경제지주의 전기·수소차 충전사업 승인을 요청('23.1.)하였고, 농식품부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2026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향후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승인가한 연장을 결정하기로 하였음.

이후 농협경제지주는 추가로 지역조합의 전기차·수소차 충전사업 승인을 요청하였고, 농식품부가 지역조합의 경우 농협경제지주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승인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와 동일하게 2026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²⁾.

다만, 농식품부장관 승인 사업은 농협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한정되는바, 설치 대상 사업장은 조합원의 실익 증진 목적을 고려하여 조합원이 주로 이용하는 사업장으로 제한하였음.

[한시적 승인 관련 내용]

구분	승인조건		승인가한	승인일
경제지주	충전기 설치 대상 사업장은 조합원 실익 증진 목적을 고려하여 내부규정으로 제한	수소차 충전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설치비용의 50% 이상을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26.1월	'23.1.20.
농축협	- 경제지주의 예비타당성 심사 - 조합원 실익 증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주로 이용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26.1월	'23.9.8.

※ 자료: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사업 승인 문서 재구성

2) 농식품부 승인 공문은 참고자료1 참조

이에 따라 현재 농협경제지주는 자체 전기차 충전사업 브랜드(NH Charge, '24.9.9.)를 통해 전국 56개소에 110기의 전기차 충전시설³⁾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수소차 충전시설은 운영하고 있지 않음.

지역조합의 경우 인천 남동농협만이 전기차 충전시설(15기)과 수소차 충전시설(2기)을 설치하여 운영⁴⁾(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외부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지역농협 2개소⁵⁾에서 추가로 설치·운영할 계획임.

[충전시설 실제 운영 모습]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5.3.24)

참고로,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지역조합은 충전시설의 설치 장소를 임대하는 등 외부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모두 위탁하고 있음.

3) 전국 운영 시설 현황은 참고자료2 참조

4) ○ 운영 현황: 인천 남동농협에서 '24.4월 사업개시 후 운영 중

○ 운영 사유: '21.7월 수소차충전소 구축사업 업무협약(인천광역시, 인천테크노파크, 남동농협)

○ 정부·지자체·농협 비용 분담액 및 비율: 총사업비 87억원 중 환경부 25억원(29%), 인천시 25억원(29%), 남동농협 37억원(42%) 분담

5) 전북 삼기농협: '25.6월 준공 예정, 3기 설치 예정/전남 진원농협: '26년 상반기 준공 예정, 13기 설치 예정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2024년 말 기준으로 517개 사업장(남동농협 직접 설치 포함)에서 총 1,381기가 운영 중이고, 수소차 충전시설의 경우 4개 사업장(남동농협 직접 설치 포함)에서 총 8대가 운영 중임.

[농협 사업장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 현황]

(단위: 기)

유형	급속	완속	계
공공형(환경부, 한국전력)	138	3	141
민간사업자	456	784	1,240
계	594	787	1,381

※ 자료: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농협 사업장 수소차 충전시설 운영 현황]

구분	경기 파주농협	경기 회천농협	강원 횡성농협	인천 남동농협
협력기관	코하이젠, 파주시	코하이젠, 양주시	한국가스기술공사, 횡성군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시
사업개시	'24.9.	'24.1.	'23.8.	'24.4.
충전기수	3대	2대	1대	2대
부지면적	600평	500평	970평	2,774평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5.3.24)

한편, 지역조합 및 경제지주는 주유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주유사업의 경우 현행법 제57조제1항제2호다목 등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공급 등의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임.

[주유사업 수행 근거]

지역농협	지역축협	농협경제지주
§57①	§106	§161조의4①
■ 경제사업(2호) -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 경제사업(2호) -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 농업경제사업(1호 및 §134조①2호) -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조합원들은 농협이 직접 설치·운영하고 있는 주유소를 통해 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난방기 등 농업기계 작동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⁶⁾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일반 차량에 대한 주유도 하고 있음.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농업·임업·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①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내수면 어업·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으로 한정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농·임·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②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를 말한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3조(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농림특례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농업기계로 별표1과 같다.

[별표1]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 | |
|---|
| 1. 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액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 16 <생 략>
17. 농업용 난방기(온실, 비닐하우스, 축사에서 사용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채소작물, 과실작물, 화훼작물, 버섯, 종자·묘목재배 및 「축산법」 제2조의 따른 가축 및 곤충류 사육용 난방기와 노지에서 사용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2호의 이상저온, 서리 등으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예방을 위한 난방기를 말한다)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 42. <생 략>
43. 농업용 로더(4톤 미만)
44. 동력제초기
45. 농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소형및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한다)
46.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
|---|

(2)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조합 사업 범위 추가에 대한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조합(이하 ‘농협’이라 함)은 농식품부의 승인에 따라 조합원의 실익을 증진하는 범위 내에서 전기차·수소차 충전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개정안은 농협의 사업 범위에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명시하여 해당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협 주유소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먼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첫째, 친환경자동차의 증가 추세,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보급정책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등 정부 정책에 농협 역시 적극 참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2024년 말 기준으로 누적 전기차는 68만 4,244대, 누적 수소차는 3만 7,930대로 2023년 말 대비 각각 25.8% 및 10.7% 증가하여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61% 0.15%에 이르고 있음⁷⁾.

7) 2024년 말 기준 시도별 자동차 누적등록 현황은 참고자료3 참조

[자동차 누적등록 현황]

(단위: 대, %)

구분	전기차(a)	비율(a/c)	수소차(b)	비율(b/c)	전체 자동차(c)
2023년(d)	543,900	2.10	34,258	0.13	25,949,201
2024년(e)	684,244	2.61	37,930	0.15	26,297,919
증가율(e/d)	25.8		10.7		1.3

※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5.1.21.) 재구성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⁸⁾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국가비전으로 삼고 있음.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023. 4.)」을 마련하고, 부문별로 중장기 감축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음⁹⁾.

이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 전기차 충전소 123만기 이상, 수소차 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9) 관련 자료는 참고자료4 참조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등¹⁰⁾에 따르면 주차면수 50개 이상인 공공건물 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일정 비율(기축시설 2%, 신축시설 5%)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농협 역시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둘째, 향후 친환경차 보급 증가에 따른 농촌지역에서의 수요 증가로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을 이용하려는 조합원이 많아질 경우 ‘전기·수소차 충전사업’이 주유사업과 같이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공급 사업으로 일부 인정받을 여지도 있어 보임.

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라. 판매시설

자. 업무시설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농협이 전기·수소차 충전사업을 수익사업의 하나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하는 지역조합, 경제지주의 설립 목적 및 조합의 영리 목적 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5조 등¹¹⁾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대법원 판례¹²⁾에 따르면 조합의 영리 목적 업무는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인데, 전기·수소차 충전사업은 조합원보다 조합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짐.

이에 농협에 대하여 전기·수소차 충전사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보다 현행과 같이 농식품부의 승인을 통해 조합원이 주로 이용하는 사업장으로 제한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농협의 설립 목적 등에 보다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11)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며, 농업인과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최대 봉사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제2항이 금지하는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라고 함은 조합 자체의 이윤 획득 또는 잉여금 배당목적의 업무를 말하고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대법원 1993.5.14. 92누10630)

둘째, 지역조합 등과 관련하여 전기·수소차 충전사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충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될 필요가 있음.

충전시장에서 본격적인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적어도 전체 자동차 보급량의 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¹³⁾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충전시장은 아직 미성숙 단계로 지역조합이 충전시설 운영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워 보임.

실제로 낮은 수익성은 물론 높은 설치비용¹⁴⁾, 엄격한 전기차충전사업자 등록요건¹⁵⁾ 및 보조금 신청자격¹⁶⁾ 등으로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을 직접 설치한 지역조합은 전국 1,111개 중 1개소(인천 남동농협)에 불과하고, 추가로 2개소(전북 삼기농협, 전남 진원농협)만이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바 있음.

13) 전기차 충전소와 시장 기회 분석-영국 사례 중심, 딜로이트, p.24, 2021

14) 급속 100kW 50백만원, 중속 30kW 16백만원, 완속 7kW 3백만원 등

15) 전기·정보통신 등 분야 기사 1명 이상, 안전인증표시등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 구비 등

「전기사업법」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8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인력·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3(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인력·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구분	등록기준		
	인력	시설	자본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 또는 환경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등을 받은 콘센트(전기차 충전에 사용된 전력량의 계량 및 요금부과기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을 받은 전기차충전기를 갖추 것	해당없음

16) 충전시설 설치·운영·유지보수·민원응대 관리서비스 제공, 운영시스템 국제인증 취득 등(환경부, 「'24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

그 외에는 충전기 설치장소 임대 등 충전기 설치를 외부사업자에게 설치·운영 위탁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등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더욱 확대되고 사업체계가 정립되어 충전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역조합이 무리하게 전기차 충전시설 등에 투자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농식품부 승인사업으로서 농협경제지주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농협의 사업 범위에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명시하는 것은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보급정책에의 부응 필요성, 농협의 설립 목적 및 조합의 영리 목적 금지 조항에의 부합 여부, 국내 전기차 등 충전시장의 성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5

참 고 자 료

청탁거절은 단호하게 청렴실천은 담당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경유)

제목 농협 전기·수소차 충전소 사업 승인

1. 관련: 농협 경제(신재생센터)27107-2(2023.1.11.)호.
2. 귀 지주에서 요청한 '농협의 전기차·수소차 충전사업 승인'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사업계획 보완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승인 관련 사항 -

- 농협경제지주의 전기·수소차 충전소 설치·운영 사업 한시적으로 승인(3년간 운영하고 연장 시 사업 타당성 재검토)
 - 사업 연장 시 기존 설치된 사업소는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사업의 실시 및 추가 확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
- 농협경제지주의 충전기 설치 대상 사업장은 조합원 실익 증진 목적을 고려하여 농협경제지주 내부규정으로 제한
- 수소차 충전소 설치·운영은 농협경제지주가 지자체·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설치비용을 50% 이상 지원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
 - * 충전기 설치 비용 및 고압공사, 굴착 비용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 비용.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주무관	임기훈	사무관	여종수	농업금융정책과장	농업금융정책과장명 2023.1.20.
협조자				장	강동윤
시행	농업금융정책과-267	(2023. 1. 20.)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여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1758	팩스번호	044-868-0134	/	kheom76@korea.kr / 비공개(7)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경유)

제목 농협 전기·수소차 충전소 사업 추가 승인

1. 관련 : 농협 경제(신재생센터)27107-2(2023.1.11)호, 농업금융정책과-267(2023.1.20.)호.
2. 귀 지주에서 신청한 '전기차·수소차 충전 사업'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승인하오니,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추가 승인 사항 -

- 조합의 전기·수소차 충전소 설치·운영 사업 한시적으로 승인(~26.1월)
- 농협경제지주 예비타당성 심사를 거친 조합에 한하여 사업 승인
 - 사업이 조합원 실익 증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주로 이용하는 사업장으로 한정(농협경제지주 내부규정으로 제한)
 - 수소차 충전 사업은 조합이 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설치 비용*을 50% 이상 지원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
- * 충전기 설치 비용 및 고압공사, 굴착 비용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 비용.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주무관	임기훈	사무관	김효정	농업금융정책과	전광 2023.9.8.
협조자				장	강동윤
시행	농업금융정책과-2845	(2023. 9. 8.)	접수		
주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여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1758	팩스번호	044-868-0134	/	kheom76@korea.kr / 비공개(7)

참고 2	경제지주 전기차 충전기 현황
-------------	------------------------

구분	개소	기
강원	5	7
경기	10	18
경남	7	23
경북	6	9
광주	1	1
서울	1	5
울산	3	7
전남	6	8
전북	7	14
제주	1	2
충남	4	6
충북	5	10
합계	56	110

참고 3 **시도별 자동차 누적등록 현황(' 24년 말 기준)**

(단위: 대, %)

구분	전기차(a)	비율(a/c)	수소차(b)	비율(b/c)	전체 자동차(c)
서울	83,868	2.64	3,267	0.11	3,176,933
부산	44,259	2.84	2,295	0.15	1,559,310
대구	35,212	2.79	700	0.06	1,262,604
인천	54,398	3.12	2,581	0.15	1,747,927
광주	15,240	2.09	1,277	0.18	730,751
대전	21,314	2.90	1,820	0.25	737,012
울산	9,817	1.62	2,990	0.50	607,481
세종	5,424	2.69	530	0.27	202,257
경기	151,850	2.29	8,291	0.13	6,645,518
강원	21,004	2.41	2,732	0.32	874,655
충북	25,375	2.68	2,268	0.24	949,503
충남	30,654	2.41	1,733	0.14	1,272,954
전북	24,872	2.48	2,623	0.27	1,002,889
전남	31,417	2.46	1,197	0.10	1,277,926
경북	33,905	2.19	554	0.04	1,552,434
경남	46,628	2.36	3,001	0.16	1,982,320
제주	49,007	6.85	71	0.01	715,445
합계	684,244	2.61	37,930	0.15	26,297,919

1-4-1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촉진

① 전기·수소차로의 전환 가속화 (환경부,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 내연차의 친환경차 전환·대체를 촉진하기 위해 '30년 누적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수소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세제감면 추진
 - * 차종별 생산여건, 충전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30년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
 - 구매보조금을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성능별로 차등화하고 다자녀 가구·취약계층 우선지원
 - 자동차의 친환경 수준을 고려한 세제지원 검토
 - * 보조금, 세제감면 등은 해외동향 및 친환경차 전환속도 등을 감안하여 운영방안 마련
- 공공부문은 의무구매 차종 확대*, 민간부문은 보급목표 비율을 점진 상향하면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
 - * 특수차, 청소차 등 신차종은 출시 시기에 맞추어 의무구매 차종에 포함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은 전기·수소차로만 신규차량 도입(23~100%), 단계적으로 대상차종(상용) 및 대상기관(시범사업 발굴) 확대
 - 민간기업의 보유·임차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K-EV100 캠페인 등 활성화
-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수업종별 특성에 따라 전기·수소차 우선전환, 전용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사업용차량 전환 로드맵」 수립 추진(23)
 - * 연료보조금, 전용 대용량 충전인프라, 전기·수소 사업용차량 운행 시범사업 등 추진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무공해차 중심으로 재편하고 실적 유연성 및 기여금 제도를 시행하여(23~) 무공해차 공급을 촉진

② 전기·수소차 시장 선점을 위한 생산체제 구축 및 평가기반 마련 (산업부, 국토부)

- 전기·수소차 보급목표 상향(30년까지 450만대)과 연계하여 국내 전기·수소차 생산물량 확대 추진
 - * 국가전략기술(現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미래차 기술 포함 추진
 - 중형 3사가 전기차 국내 생산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점 유도
- 전기차 안전성능 관리기술 개발과 함께 전기차 전문 정비업체 및 교육 확대, 안전인증을 위해 자동차·부품 인증체계 강화

- CNG·수소 복합검사소 전환, 수소차 전용검사소 확충 및 수소차 안전인증센터 구축(~'26), 수소버스 대형 내압용기 검사기술 장비 개발
- 전기·수소차 성능·편의성 향상 지원 및 뉴플레이어 육성
 - '30년 ①주행거리·내구성 대폭 제고, ②전비 향상, ③5분 내 고전압 전기차 고속충전 기술 등 확보
 - 5톤·10톤 수소특수차 및 초소형전기차, 중소형화물·버스 개발 등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진입 지원
-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국내 완결적인 공급망 구축
 - 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30) 및 정부지원을 통해 전기차 생산 물량에 대한 차질 없는 배터리공급 능력 확보
 - 인천·울산·창원 등에 대규모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추진
 - 전기·수소차에 필요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이행체계 확립
 - 수소트럭용 전기모터, 박막 필름 소재 등 핵심부품(14종) 기술력 확보

③ 신속·편리한 전기·수소차 충전기반 마련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 전기차 보급목표, 차종·운행패턴 등을 고려한 생활·교통 거점 중심의 맞춤형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 체계* 마련('30년 123만기 이상)
 - * 충전기 위치·상태 등 충전정보에 대한 통합플랫폼 구축 및 충전기 유지보수 등
 - 전기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25년 10%(신축)로 상향하고, 이후 전기차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상향 검토
 - 공공 급속충전기(전체 충전기 중 70% 수준) 민간이양을 추진('23~'25)하되, 충전 사각지대 중심으로는 공공 급속충전기 지속 운영
- 수소충전소는 교통·물류거점 등을 중심으로 '25년까지 450기 이상 (기초지자체별 1기 이상), '30년까지 660기 이상 전국 권역별로 균형 있게 구축
 -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한 재정적 지원 외에 차고지 등 접근성을 고려한 전략적 배치, 이용자 관점의 정보제공 및 충전시설 모니터링 등 충전편의 강화
 - * 대용량 충전소 확충 및 그린수소 충전인프라(신재생e 활용·생산) 설치 유도
 - 수소충전소 핵심품목(압축기 등) 100% 국산화·성능고도화 추진(~'30)